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 대표이사

(참조)
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차령) 공포 안내

- 1. 전자관보 대통령령 제31964호(21.08.31)와 관련입니다.
- 2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전세버스 기본차령을 2년 연장 하여 최대 13년 사용)이 금일(21.8.31)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개정주요내용

구 분		기본차령	연장가능기간	비고
전세버스	종 전	9년	2년	11년 사용
	개 정	11년	2년	13년 사용

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

나. 부칙 주요내용

- (시행일) 공포한 날부터 시행
- 작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(별표2 제1호 비고 가목, 2020.9.1. 시행)
 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 늘어난 차령기간(2년)에서 1년
 만큼 진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 연장

서전버조 21-159호 (2021.08.31)

- 차령 기산일이 2009.9.1~2009.10.31까지인 자동차 및 2010.9.1~2010.10.31까지 인 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(21.8.31)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기간에 받는 임사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※ 단,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운행할 수 없음

붙 임:대한민국 전자관보 1부.

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



부 장 라영석 실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 시행 서전버조 21-159 호 (2021.08.31)접수 (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 / http://www.tourbus.or.kr 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공개 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